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예방·치유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59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지원 등	2
2.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8
※ 참고자료	
1.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4
2.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17
3. 학교급별 관심군 현황	2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용우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5. 10. 13.
3. 회 부 일 : 2025.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의 권고 또는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상담·치료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이에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정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인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Ⅲ. 검토의견

1.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지원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디어 이용 습관을 조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1항 및 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u>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_____ _____ _____ -----<u>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u>-----. 1. <u>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 권고</u> 2. <u>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u> 4. <u>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한 예방</u>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 지원 ② 교육감은 학생의 미디어 이용습관을 조사하여야 한다.
--	---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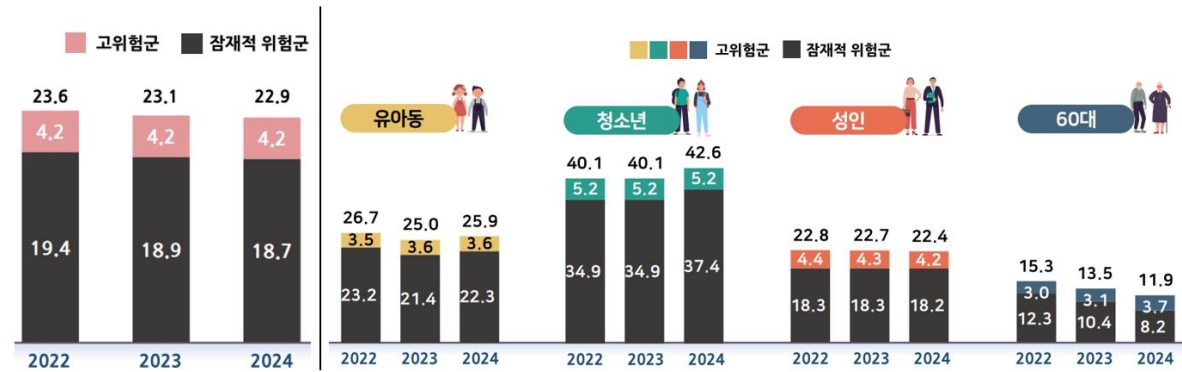
-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을 ① 일상에서 과도하게 이용하는 생활 습관이 두드러져서(현저성), ② 스스로 이용을 조절할 수 없고(조절 실패), ③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게 되는(문제적 결과) 상태를 의미함. ①~③ 척도에 따라 과의존 위험군 수준을 분류하며 연령대별 기준 점수대에 따라 일반 사용자군→잠재적 위험군→고위험군으로 분류함.

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의존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목디스크 및 거북목증후군,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 측면에서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¹⁾.

-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전체의 42.6%에 달하고, 이는 타 연령대의 과의존 위험군보다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음.

1)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연도별·연령대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에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를 개정하여, 학교장이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생의 미디어 이용습관을 조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차원에서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미디어 이용 특성과 생활 패턴에 맞춘 맞춤형 지도가 가능함. 이를 통해 학업 집중력 저하나 사회성 발달 지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디지털 이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또한 교육감이 학생의 미디어 이용습관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연령별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음. 이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 조문 위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할 필요함.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5는 2025년 4월 1일 신설된 조문으로,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보호자의 협조의무 등을 명시한 규정임.

개정안은 본 조문에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추가하려는 것이나, 디지털 과의존이 정서·행동 문제의 원인 또는 결과로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행동중독적 특성을 비롯해 예방·관리 방식이나 치료 접근법에서 독자적 대응체계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정서·행동 문제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음.

□ 둘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교육 및 실태조사가 기 시행 중이므로 중복의 소지가 있음.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학교에서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³⁾ 개정안과 동일한 명칭의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 각 급 학교와 협력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음. 동 조사는 2025년 기준 초4·중1·고1 학생 123만 4,58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을 조사하였고, 과의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디어 과의존 정도에 따라 상담, 병원치료, 치유프로그램, 부모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⁴⁾⁵⁾.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법」⁶⁾에 따라 2년마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실태조사에는 최근 1년간 매체별⁷⁾ 이용률, 최근 1년간 성인용 영상물·간행물 이용률 등을 조사하고 있음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 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여부 진단

4)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2025.6.18.

5) 진단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1: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참조.

6) 「청소년 보호법」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7) 숏폼 콘텐츠,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등

8)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2: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참조.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디지털 과의존으로 인한 우려가 있는 최근 상황에서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명시하고 미디어 이용습관 조사 의무를 부과하여 실태를 파악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동감함
- 다만,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전국 단위로 실시하여 미디어 이용습관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기존 조사와의 중복 문제가 있고 유사 항목의 중복조사가 이루어져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조문 신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한편, 현행법은 학교 구성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한 후,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률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아울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대응센터를 두고 있는 바, 과의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대응센터에서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

○ 시·도교육청

(광주, 제주) 신중검토

- 기존 조사와의 중복 문제가 있고, 유사 항목의 중복조사가 이루어져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 존재
-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별도의 조사지와 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전문성 확보와 통계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인력 낭비가 발생

(서울) 일부수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의해 학교에는 매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고 있어 ‘디지털 과의존’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용어 수정 필요

2.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상담·치료 외에도 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u>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_____ _____ _____다 <u>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u> 1. <u>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 권고</u> 2. <u>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u>

<신 설>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의 기준·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의 기준·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의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③ ————— 상담, 치료
—————
—————
—————.

④ —————
—————
————— 또는 —————
—————
—————
—————
—————
————— 학생에게 검사·상담 —————
—————.

⑤ ————— 제항 —————
————— 검사·상담 —————
—————.

⑥ ————— 권고, 치료 권고·지원,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 —————
————— 검사·상담·치료 —————
—————
—————.

나. 검토의견

□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검사를 운영하고 있음. 첫째, ‘학생정서·행동특성검

사'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 건강검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검사로,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둘째, '마음 EASY 검사'는 위험군 학생을 상시적으로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시 실시하고 있음.

- 2024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결과에 따르면, 관심군 학생은 전체의 4.4%, 자살위험군 학생은 1.1%로 나타남⁹⁾. 이는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의 수와, 그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요약 >

연도	검사 실시 학생 수	관심군		자살위험군(관심군에 포함)	
		학생 수(명)	비율(%)	학생 수(명)	비율(%)
2022	1,743,897	80,676	4.6	19,292	1.1
2023	1,731,596	76,663	4.4	20,237	1.2
2024	1,658,715	72,300	4.4	17,667	1.1

* '관심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상담 결과 학교 밖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등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학생으로 일반관리군과 우선관리군(자살위험 포함)으로 구분

* '자살위험군': '자살 생각'이 중등도 이상의 학생으로 즉각적 전문기관 의뢰 및 학부모 면담 등 필요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개정안은 정서·행동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조치로서, 건강체험프로그램 지원 및 검사를 받게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한 상담이나 치료를 넘어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기회를 균형 있게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9) 학교급별 현황 등 상세한 수치는 '참고자료3: 학교급별 관심군 현황' 참조.

또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치료 외에 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되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 대상으로 하는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5는 아직 시행되기 전의 조문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공포 후 시행 전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¹⁰⁾.

최근 학생들의 정서·행동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하는 것은 제도의 실제 운영 결과나 현장 적용의 실효성을 검토할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따라서 현재 공포된 조문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임.

10)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 둘째, 개정안의 ‘건강체험활동’ 개념에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인천 동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음주 예방교육, 신체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체육관, 스포츠센터 이용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5만원)를 지급하는 사업이 진행 중임.

이처럼 ‘건강체험’이 다양한 형태로 이미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건강체험활동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검사를 받게 하는 것에 입법 실익이 충분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공포된 제18조의5제4항에서 상담·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담이나 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검사 절차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의 효과성이 충분한지, 치료를 위한 검사는 치료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명시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상담·치료 외에도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명시하는 개정 취지에는 동감함
- 다만, 현행법 제18조의5제2항에서 학교장은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명시할 실익이 적음
- 현행법은 학교 구성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한 후,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별도 상담 권고 등의 조치 없이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 모든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보편적 교육 활동으로 강조될 필요성도 존재하며,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를 규정하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명시한 것과 같이 「학교체육 진흥법」에 동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충남교육청: 신중검토

- 건강 체험활동이 정서·행동 문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건강 체험활동의 근거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건강 체험활동은 정서·행동 문제의 개선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모든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보편적 교육 활동으로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

문 의 처

02)6788-5184

참 고 1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¹¹⁾

□ 조사 개요

○ 목 적

-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습관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자율적 개선 유도
- 디지털 미디어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 예방 및 맞춤형 상담·치료지원

○ 조사기간 : 2025년 4월 1일(화) ~ 5월 9일(금)

○ 조사도구

- 인터넷·스마트폰 : K-척도(인터넷 과의존), S-척도(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유아동 관찰자척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개발

○ 조사참여 : 전국 초4·중1·고1 1,234,587명, 초1 보호자 237,890명

【표 1】 진단조사 참여 학교 및 참여자 수

(단위: 개교, 명)

구분	초등 1학년 (보호자)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합계
대상 학교 수	6,093		3,334	2,421	11,848
참여 학교 수	5,957		3,287	2,382	11,626
대상 학생 수	319,835	423,677	468,539	419,252	1,631,303
참여자 수	237,890	386,896	451,695	395,996	1,472,477

□ 조사 결과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표 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초4, 중1, 고1)

(단위 : 명)

구 분	참여 인원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24년	1,249,317	174,374	127,845	221,029
'25년	1,234,587	168,163	124,023	213,243
증감	감 14,730	감 6,211	감 3,822	감 7,786

11) 자료: 성평등가족부

【표 3】 2023~2025년 인터넷, 스마트폰 위험사용자군, 주의사용자군

(단위 : 명)

연도	구분	인터넷 과의존 현황(명)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명)			
		조사 인원	위험 사용자군	주의 사용자군	소계	조사 인원	위험 사용자군	주의 사용자군	소계
'23	초4	399,129	6,429	47,889	54,318	384,842	4,111	26,140	30,251
	중1	439,655	6,371	66,042	72,413	436,223	6,193	46,173	52,366
	고1	438,005	3,690	50,644	54,334	435,161	4,462	44,481	48,943
	합계	1,276,789	16,490	164,575	181,065	1,256,226	14,766	116,794	131,560
'24	초4	388,399	6,211	42,315	48,526	354,868	3,690	23,515	27,205
	중1	441,897	6,893	64,665	71,558	434,871	6,027	46,277	52,304
	고1	419,021	4,201	50,089	54,290	415,379	4,691	43,645	48,336
	합계	1,249,317	17,305	157,069	174,374	1,205,118	14,408	113,437	127,845
'25	초4	386,896	6,736	41,034	47,770	354,648	4,253	23,156	27,409
	중1	451,695	6,697	61,445	68,142	444,930	5,930	43,653	49,583
	고1	395,996	4,092	48,159	52,251	392,829	4,632	42,399	47,031
	합계	1,234,587	17,525	150,638	168,163	1,192,407	14,815	109,208	124,023

【표 4】 2023~2025년 학년별·성별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수

(단위 : 명)

연도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총 계		
	위험군		소계	위험군		소계	위험군		소계	위험군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3	34,214	20,104	54,318	38,300	34,113	72,413	25,328	29,006	54,334	97,842	83,223	181,065
'24	30,951	17,575	48,526	37,418	34,140	71,558	26,201	28,089	54,290	94,570	79,804	174,374
'25	30,640	17,130	47,770	35,473	32,669	68,142	25,947	26,304	52,251	92,060	76,103	168,163

【표 5】 2023~2025년 학년별·성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수

(단위 : 명)

연도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총 계		
	위험군		소계	위험군		소계	위험군		소계	위험군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3	18,788	11,463	30,251	26,471	25,895	52,366	23,441	25,502	48,943	68,700	62,860	131,560
'24	17,076	10,129	27,205	25,771	26,533	52,304	23,852	24,484	48,336	66,699	61,146	127,845
'25	17,479	9,930	27,409	24,562	25,021	49,583	24,084	22,947	47,031	66,125	57,898	124,023

【표 6】 2023~2025년 학년별·성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복위험군 수

(단위 : 명)

구분		2023	2024	2025
초4	남	12,505	11,478	11,904
	여	6,937	6,172	6,046
	소계	19,442	17,650	17,950
중1	남	17,110	16,676	15,809
	여	16,939	17,374	16,429
	소계	34,049	34,050	32,238
고1	남	12,741	13,814	14,058
	여	15,759	15,676	14,697
	소계	28,500	29,490	28,755
전체		81,991	81,190	78,943

○ 초1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표 7】 2023~2025년 초1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단위 : 명)

연도	참여인원			일반군 인원			관심군 인원		
	남	여	총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23	118,367	111,520	229,887	108,759	104,429	213,188	9,608	7,091	16,699
'24	132,229	124,470	256,699	122,142	117,615	239,757	10,087	6,855	16,942
'25	121,914	115,976	237,890	114,036	110,643	224,679	7,878	5,333	13,211

* 초등 1학년(보호자 대상 조사)은 '23년 최초로 시범 조사하였고, '24년부터 본조사에 포함하여 실시

참 고 2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¹²⁾

- ▶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 숏폼 콘텐츠 94.2%,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92.6%,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91.1%, TV방송 89.7%, 온라인/모바일 게임 88.3% 등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 (최근 1년간 성인용 영상물·간행물 이용률)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 이용 청소년(26.5%)과 성인용 간행물 이용 청소년(11.2%)은 '22년 대비 모두 감소함
 -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 ('20) 37.4% → ('22) 47.5% → ('24) 26.5%
 -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 : ('20) 24.9% → ('22) 24.1% → ('24) 11.2%
- ▶ (개인정보 피해 경험) 청소년의 개인정보 피해 경험률은 '22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인터넷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함' 9.3%, '내 친구가 나의 동의 없이 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SNS 등에 공개 함' 6.5%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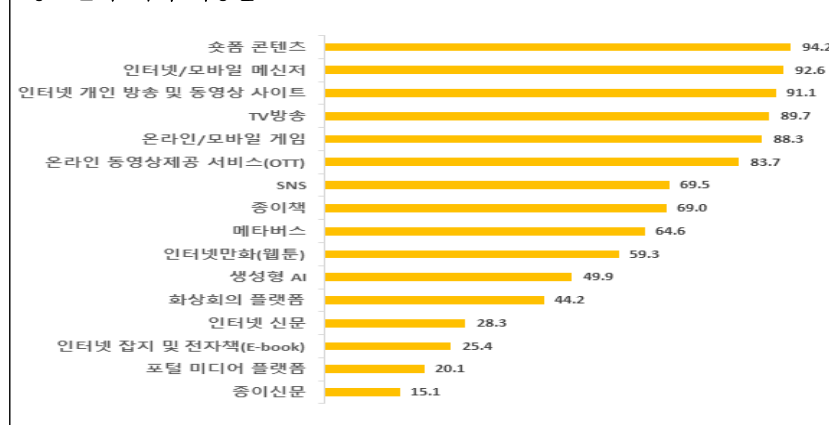
□ 최근 1년간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은 이번 조사에서 신규로 추가된 숏폼 콘텐츠의 이용률(94.2%)이 가장 높았고, 생성형 AI도 청소년의 절반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은 숏폼 콘텐츠, TV 방송, 인터넷개인방송 및 동영상사이트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숏폼 콘텐츠, 인터넷개인방송 및 동영상사이트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 학교급별 매체 이용률 상위 3개(2024) >

구 분	상위 1순위	상위 2순위	상위 3순위
전체	숏폼 콘텐츠(94.2%)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6%)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1.1%)
초등학교	숏폼 콘텐츠(88.9%)	TV 방송(88.7%)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87.7%)
중학교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8.0%)	숏폼 콘텐츠(96.7%)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2.6%)
고등학교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8.2%)	숏폼 콘텐츠(97.4%)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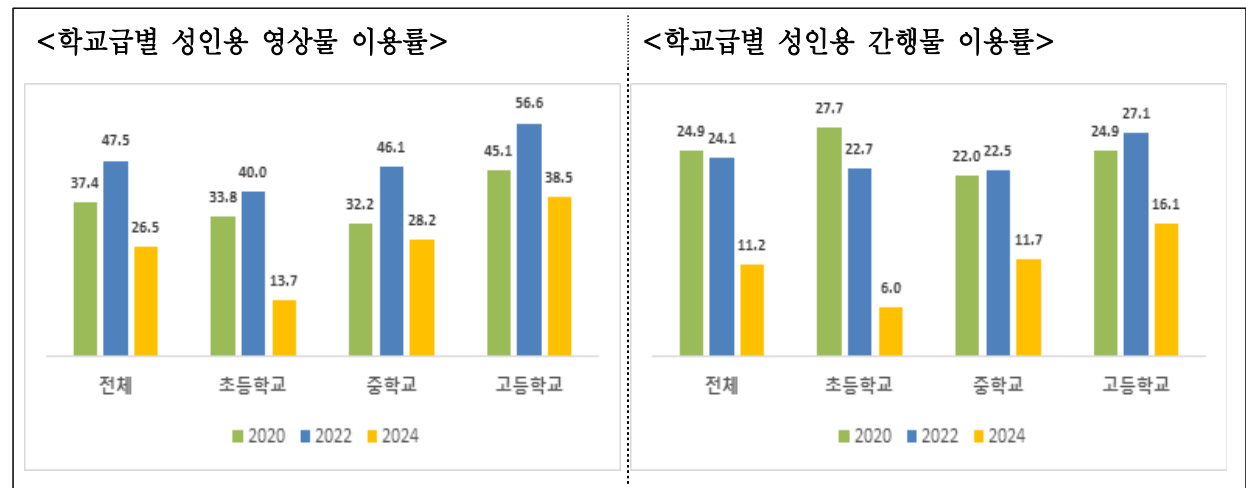
<청소년의 매체 이용률>



12) 자료: 성평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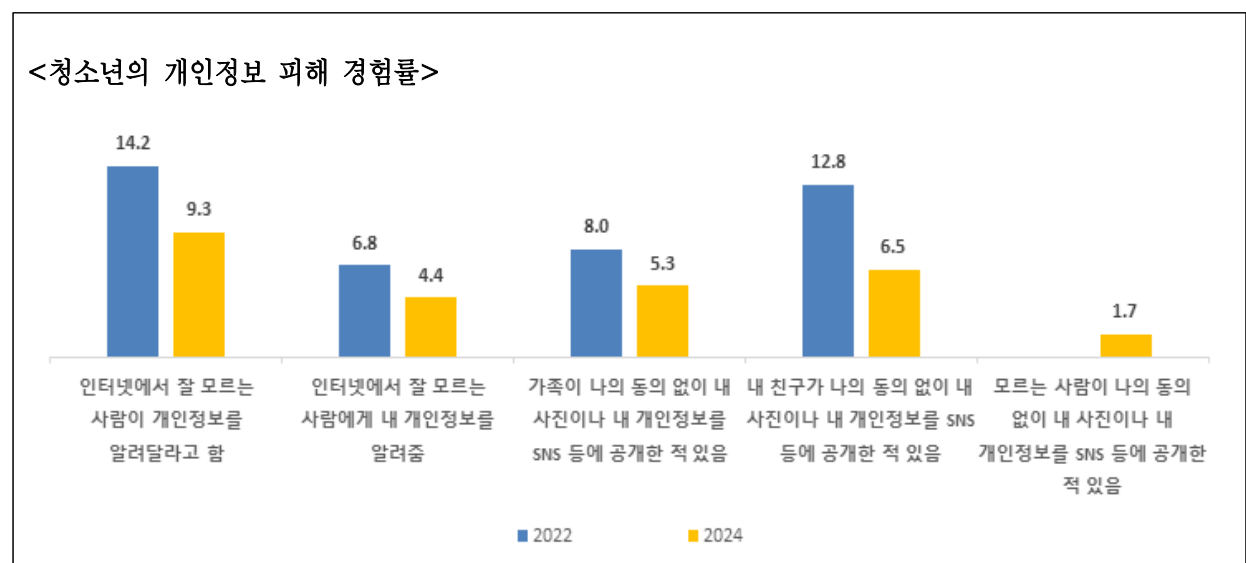
□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26.5%,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은 11.2%로 '22년 대비 영상물 21.0%p, 간행물 12.9%p 감소했다.

○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13.7%('22년 40.0%),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 6.0%('22년 22.7%)로 '2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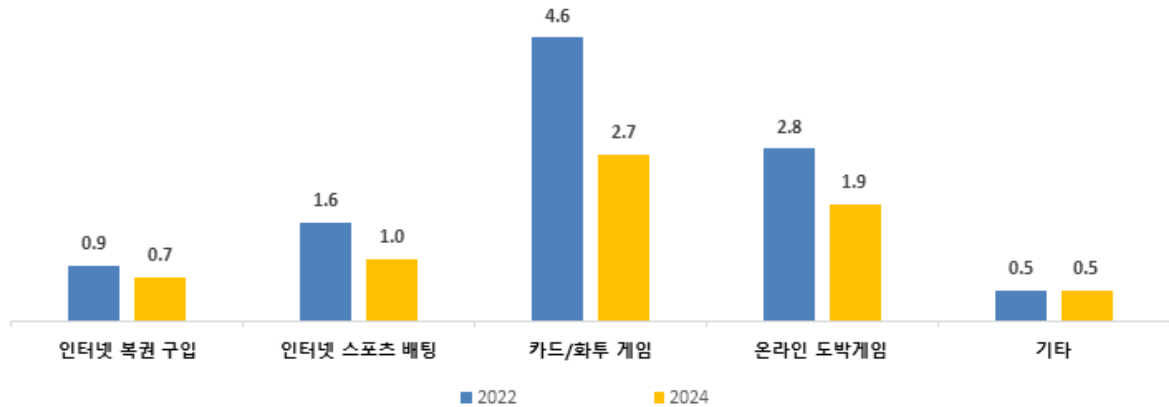
□ 청소년의 개인정보 피해 경험률은 '인터넷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함' 9.3%, '친구가 동의 없이 SNS에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적 있음' 6.5%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22년에 비해 개인정보 피해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내 친구가 나의 동의 없이 내 사진이나 내 개인정보를 SNS 등에 공개한 적 있음'이 '22년 조사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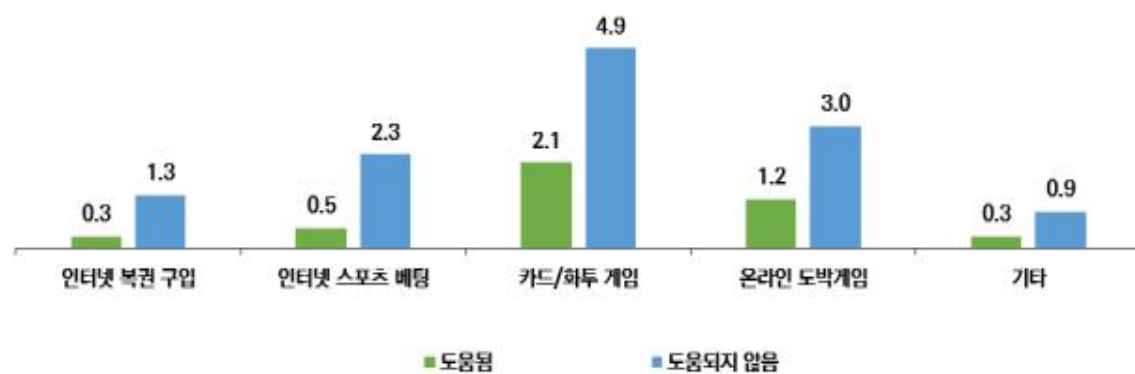
- 중·고등학생의 온라인 도박성 게임 경험률은 ‘카드/화투 게임’ 2.7%, ‘온라인 도박게임’ 1.9%, ‘인터넷 스포츠 베팅’ 1.0%, ‘인터넷 복권 구입’ 0.7%, ‘기타’ 0.5%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조사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중·고등학생의 온라인 도박성 게임 경험률>



-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경우 인터넷 복권 구입, 인터넷 스포츠 베팅, 카드/화투 게임, 온라인 도박성 게임 경험률이 모두 낮았다.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의 도움 정도에 따른 온라인 도박성 게임 경험률>



참 고 3

학교급별 관심군 현황¹³⁾

- ◆ '관심군'이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상담 결과 학교 밖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등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학생으로 일반관리군과 우선관리군(자살위험 포함)으로 구분
 ◆ '자살위험군'이란? '자살 생각'이 중등도 이상의 학생으로 즉각적 전문기관 의뢰 및 학부 모 면담 등 필요

연도	학교급	검사 실시 학생 수	관심군		자살위험군(관심군에 포함)	
			학생 수(명)	비율(%)	학생 수(명)	비율(%)
2024	초	766,078	30,530	4.0	16	0.0
	중	452,902	23,706	5.2	9,753	2.2
	고	439,380	18,026	4.1	7,880	1.8
	특수	355	38	10.7	18	5.1
	합계	1,658,715	72,300	4.4	17,667	1.1
2023	초	815,468	31,301	3.8	35	0.0
	중	451,601	25,479	5.6	11,029	2.4
	고	464,232	19,855	4.3	9,157	2.0
	특수	295	28	9.5	16	5.4
	합계	1,731,596	76,663	4.4	20,237	1.2
2022	초	892,277	33,828	3.8	42	0.0
	중	428,531	26,214	6.1	10,648	2.5
	고	422,773	20,593	4.9	8,585	2.0
	특수	316	41	13.0	17	5.4
	합계	1,743,897	80,676	4.6	19,292	1.1

※ 관심군 학생수에 자살위험군 학생수 포함됨

13) 자료: 교육부